

충청북도홍덕사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3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개 정 이 유

- 문화재위원회에서는 홍덕사지의 인쇄문화전시관을 박물관으로 승격시키고 그 명칭도 『청주고인쇄박물관』으로 하여, 고인쇄전문박물관으로 운영키로 하고
-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에 『청주고인쇄박물관』으로 등록을 필하였음(1992. 12. 21)
- 세계에서 제일 먼저 금속활자를 발명한 우리 민족의 고인쇄문화수준을 세계에 선양하고 고인쇄전문박물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적지관리사무소를 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.

□ 주 요 골 자

- 충청북도홍덕사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“충청북도홍덕사지관리사무소”를 “충청북도청주고인쇄박물관”으로 기관명칭을 변경.

□ 내 용

- 충청북도홍덕사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 : 별첨

□참 고 자 료

- 신구조문 대비표
- 현행 충청북도홍덕사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 전문
- 청주고인쇄박물관으로 명칭변경관련 공문사본(문화재관리국)
- 관계법령발췌(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, 제18조 및 제27조)
- 박물관등록증사본

충청북도홍덕사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홍덕사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명 및 제1조중 “충청북도홍덕사지관리사무소”를 “충청북도청주고인쇄박물관”으로 한다.

제1조중 “홍덕사지 보존관리 및 인쇄문화 전시관을 운영하기 위하여”를 “청주고인쇄 박물관 운영 및 홍덕사지 보존관리를 위하여”로 한다.

제1조 내지 제4조중 “사무소”를 “박물관”으로 한다.

제3조 제1호 및 제2호중 “홍덕사지 및 인쇄문화 전시관”을 “박물관 및 홍덕사지”로 한다.

제3조 제3호중 “전시물의”를 “전시물 및”으로 한다.

제4조 및 제5조중 “소장”을 “관장”으로 한다.

제4조 제2항중 “소무”를 “관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